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32호 2020. 2. 17(월)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20 – 166호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 2020 – 18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7
장수군 공고 제 2020 – 188호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7
장수군 공고 제 2020 – 203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5

고 시

장수군 고시 제 2020 – 14호	필덕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해계획 수립 고시	33
장수군 고시 제 2020 – 15호	하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해계획 수립 고시	35
장수군 고시 제 2020 – 16호	어전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해계획 수립 고시	37

회 람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공고 제2020-166호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장수군수

1. 제안이유

「만65세 이상,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자녀」의 외래진료비지원에서 응급실진료비로 지원을 확대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 부담금“외래본인부담금”을 “외래진료 및 응급실 본인부담금”으로 변경(안 제23조 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나. 예산조치 : 조치필요(2020년 추경예산 8백만원 계상)
- 다. 합의 : 복지부(사회보장사업 변경내용), 예산부서 협의완료
- 라. 입법예고기간 : 2020. 2. 6 ~ 2. 26(20일간)

4.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다. 관계법령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의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1) 우편 55634,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의료지원 과장) 전화 : 063-350-2735, 팩스 : 063-350-5720
- 2)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래 본인부담금)”을 “(외래진료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u>외래 본인부담금</u>)에 한한다.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외래 진료 및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 검사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 ·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 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장수군 공고 제2020-187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계획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장 수 군 수

1. 폐지이유

- 가.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지방공무원 법」 제41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1985. 4. 8.) 되었으며,
- 나. 제정 취지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의무 복무도록 하는 취지였으나,
- 다. 규칙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없으며, 현재 공무원 신규임용은 위의 규정이 제정될 당시 입법취지와 달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폐지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0. 2~3월중

나.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 공포 · 시행 : 2020. 3~4월 중

4. 따로 붙임

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관계법령

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전문)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성영

(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규칙 제 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장수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정 1985.04.08 규칙제0414호

개정 1988.09.29 규칙제0495호

1999.04.22 규칙제0798호

2000.12.15 규칙제0836호

(일부개정) 2002.06.01 규칙 제0861호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 적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 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 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 제 <1999.04.22 규칙0798>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
7. 삭 제<2000.12.15 규칙0836>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사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9.04.22 규칙 0798, 2002.06.01 규칙086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 선발기록 ·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29 규칙제0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4.22 규칙제0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5 규칙제0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01 규칙제0861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장수군 공고 제2020-188호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계획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장 수 군 수

1. 폐지이유

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2013. 12. 12. 시행)「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2013. 12. 12 폐지),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등에 따라 운영되어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폐지

3. 금후 계획

-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0. 2~3월중
- 나. 전라북도 자치법규 검토, 공포·시행 : 2020. 3~4월 중

4. 따로 붙임

- 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나.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전문)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성영 (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 1998.12.15 규칙 제078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채용계약서(안)(별지 제2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 제3조 별표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감안하여 그 인상을 범위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영 제3조 별표“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서 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장수군 공고 제2020-203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본 조례는 기금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2017.12.31.) 종료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5703
- 3) E-mail : kalsix@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담당자(전화 : 063-350-20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장수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2.09.24 조례 제196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노인복지법」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장수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및 시행사업
2. 여성단체 운영 및 시행사업
3.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읍·면분회의 운영 및 시행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여성·노인·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실장<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기금출납원 : 사회보장담당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지원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장수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기금을 단체, 법인 등에 보조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계획을 군보·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② 기금의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군 고시 제2020-14호

필덕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필덕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필덕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500백만원[군비]500(10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필덕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문화복지관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마을모정 조성, 마을 공동 샤워장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마을 전통공예 전수, 어르신 한글교실, 필덕 제빵교실, 선진지 견학, 주민한마음 행사 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 차 별				비고
		소 계	2019	2020	2021	
합 계	500,000	500,000	58,224	279,700	162,076	
○ H/W 사업비	376,100	376,100	0	240,700	135,400	
- 기초생활기반확충	304,700	304,700	0	195,500	109,200	
· 문화복지관 조성	195,500	195,500	0	195,500	0	
· 마을회관 리모델링	109,200	109,200	0	0	109,200	
- 지역경관개선	71,400	71,400	0	45,200	26,200	
· 마을 모정 조성	26,200	26,200	0	0	26,200	
· 마을 공동 샤워장 조성	45,200	45,200	0	45,200	0	
○ 지역역량강화	67,500	67,500	19,000	26,000	22,500	
○ 부대비용 등	56,400	56,400	39,224	13,000	4,176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9. 01. ~2021. 12.(3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20-15호

하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하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하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500백만원[군비]500(10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하평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확장
- 지역경관개선 : 마을돌담길 조성, 마을빨래터 복원
- 지역역량강화 :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마을 사과화전 잔치,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업승계 생태구축 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 차 별				비고
		소 계	2019	2020	2021	
합 계	<12,922>	<12,922>	<>	<12,922>	<>	<> 외서 자부담
	500,000	500,000	73,000	353,000	74,000	
○ H/W 사업비	233,161	233,161	0	233,161	0	
- 기초생활기반확충	77,672	77,672	0	77,672	0	
· 마을회관 리모델링	73,613	73,613	0	73,613	0	
· 마을안길 확장	4,059	4,059	0	4,059	0	
- 지역경관개선	<12,922>	<12,922>	<>	<12,922>	<>	
	155,489	155,489	0	155,489	0	
· 마을돌담길 조성	143,138	143,138	0	143,138	0	
· 마을빨래터 복원	12,351	12,351	0	12,351	0	
○ 지역역량강화	204,000	204,000	52,000	78,000	74,000	
○ 부대비용 등	62,839	62,839	21,000	41,839	0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9. 01. ~ 2021. 12. (3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 ·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20-16호

어전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어전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어전마을 마을만들기사업(자율)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500백만원[군비]500(10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어전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전마을회관 조성
- 지역경관개선 : 마을안길 꽃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 건강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 환경 캠페인 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 차 별				비고
		소 계	2019	2020	2021	
합 계	500,000	500,000	47,612	420,278	32,110	
○ H/W 사업비	380,278	380,278	0	370,278	10,000	
- 기초생활기반확충	370,278	370,278	0	370,278	0	
· 어전미을회관 조성	370,278	370,278	0	370,278	0	
- 지역경관개선	10,000	10,000	0	0	10,000	
· 마을안길 꽃길 조성	10,000	10,000	0	0	10,000	
○ 지역역량강화	49,000	49,000	13,500	20,000	15,500	
○ 부대비용 등	70,722	70,722	34,112	30,000	6,610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9. 01. ~ 2021. 12. (3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 · 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